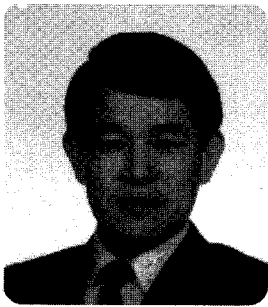


특허분쟁의 필승전략 (1)

특허분쟁의 이해와 기본전략



박 형 준
변리사
<아시아나 국제특허>

1. 시작하는 말

우리는 특허분쟁에 관하여 적지 않은 지식을 갖고 있으나 막상 특허분쟁을 당하고 보면 그러한 지식들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느낌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특허분쟁에 관한 모든 자료는 다만 특허 분쟁의 법률적 의미, 법률적 구제수단 및 절차, 심판 및 소송의 종류, 법률적 책임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추상적인 규정만을 열거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제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하여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전에 쉽게 응용될 수 있는 특허분쟁의 필승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글은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쓰여져야 하며 글의 내용이 독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활용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가급적 법률적 전문용어를 피하고 누구나 가볍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실례와 더불어 현장감 있는 내용 중심으로 기술할 것이다.

특허분쟁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와 법률 규정의 기본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다음으로 누구나 이능듯 하면서도 깊이 알지 못하여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형사고소'에 대하여 심도있게 설명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목 차

1. 특허분쟁의 이해와 기본전략
2. 형사고소의 이해와 활용
3. 특허침해에 대한 공격전략
4. 특허공격에 대한 방어전략

(고딕은 이반호, 명조는 다음호)

‘특허침해에 대한 공격전략’ 그리고 ‘특허공격에 대한 방어전략’에 대하여 모두 4회로 나누어 상술하고자 한다.

2. 특허분쟁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매우 싱거운 질문이지만 특허분쟁을 이해하고 필승전략을 수립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간단히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특허분쟁이란 쉽게 말하면 특허권 침해 문제를 놓고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서로 싸우는 것이다. 이를 좀더 전문적용어로 표현한다면, 대립되는 기술적구성(상품 또는 의장)이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행정 및 사법절차상의 공방(攻防)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허권 침해가 명백하고 또한 침해자가 침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만 있을 뿐 특허분쟁이라고 말할 수 없다. 특허분쟁은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겨서 사업의 존망을 걸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므로 누구나 알고있는 대응방법을 넘어서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찾아내고 특별한 법률적 노우하우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적수단

가. 들어가는 말

특허분쟁을 해결하는데는 여러가지 법률적수단이 있다. 여러가지 법률적 수단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그 본질을 이해하고 활동가치를 검토하는 것은 특허분쟁의 필승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한 전술적 수단을 갖게 해줄 것이다.

나. 경고장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자신의 명의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게 된다.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경우도 그러하다. 이하 특허권자라고 하면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 상표권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특허권 침해자에게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경고장을 보내어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도덕적이고 신사적인 절차로만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은 이러한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 침해자에게 특허권의 존재를 알리고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의(故意)를 성립시키는 법률상의 효과를 낳는다.

알고서 하는 행위를 고의(故意)라고 말하고 모르고서 하는 행위를 과실(過失)이라고 말한다. 과실에 의한 특허권 침해자는 경고장을 받은 순간부터 고의에 의한 침해자로 법률적인 지위가 바뀌고 만다.

과실에 의한 침해는 민사적 책임만 따르나 고의에 의한 침해는 민사적 책임은 물론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고의는 형법(刑法)상 범죄구성요건인 것이다.

강원도에서 플라스틱 관계수로를 제작하고 있던 박씨는 어느날 경찰관을 대동한 의장권자에 이끌려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박씨가 제조하는 플라스틱 관계수로는 의장권을 침해한 물건이므로 의장권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것이었다. 의장권자와 경찰관의 위협에 시달리던 박씨는 필자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다. 필자는 박씨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해석 감정서'를 써주었고 담당 형사에게 전화하여 자세히 이점을 설명하였다. 결국 경찰관은 박씨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이라는 처분을 내리게 되었다.

경고장은 형사상 고의를 성립시키는 법률 수단이지만 한편으로는 상대방에게 스스로 특허권에 승복하도록 하는 유도수단이 되며 상대방의 대응전략과 전력(戰力)을 탐색하는 유용한 수단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고장의 작성은 경우에 따라서 교묘한 심리적 전술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다. 특허심판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침해의 경고를 받거나 경고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특허청 심판소에 특허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무효심판은 특허가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유가 되고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자기가 만드는 제품이 특허기술과 권리상 그리고 구조상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줄것을 청구하는 심판이다. 그러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먼저 청구할 수도 있다.

특허심판은 통상 1년 6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특허권자는 심판청구가 계속되는 동안 상대방이 침해행위를 계속한다면 상대방의 지연전술에 말리게 된다. 그리고 1심에서 패소하는 경우

는 말할 것도 없고 1심에서 승소한다해도 그때까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사건은 2심으로 이어져 장기전의 양상으로 바뀌기 쉽다.

그러므로 특허분쟁에 있어서는 특허심판의 성격과 장단점을 깊이 파악하여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률적 수단과 전략을 복합적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형사고소

특허권침해는 형사상처벌의 대상이 된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형사고소란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간단히 이루어지며 본인이 대리인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경제적인 법률구제수단이다.

5년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사 처벌규정을 읽고나면 섬뚱한 느낌이 들 정도이나 막상 고소장을 제출하면 피일차일 하세월인 경우도 적지 않으며 감정서를 가져오라, 실물을 가져오라, 심판청구서 사본을 가져오라는 등 요구사항도 많고 그러한 것들을 모두 제출하고나면 서로 합의하라고 요구 받거나 심판이 끝날때까지 사건수사를 보류하는 경우로 부터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까지 사건처리의 결과는 특허권자에게 불만스러운 경우가 많다. 침해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만족스럽겠으나 수사기관에 자주 불려다니는것이 여간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차라리 합의하고 말걸...

형사고소는 특허분쟁을 해결하는데 가장 유력한 법률수단이지만 놀랍게도 고소를 대리하는 변리사나 변호사를 찾아 볼 수 없고 고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우리는 형사고소에 대하여 다음호에 더 보다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마. 민사소송

특허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은 침해행위의 중지와 침해제품의 압류를 위한 소송과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소송, 신용회복조치를 구하는 소송으로 구분되고 있다.

변호사는 이러한 소송을 의뢰받아 소송을 수행하지만 특허침해소송자체가 특허권침해여부의 판단이 전제가 되므로 결코 용이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양상을 띠게된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은 침해제품의 단가가 높고 기업적 차원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합하며 그나마도 전문분야의 기술적 감정이나 특허심판이 유리한 경우라야 승소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침해소송이 유리한가, 형사고소가 유리한가, 특허심판이 유리한가, 그리고 이러한 법률적 수단을 어떻게 함께 병행할 것인가는 사안의 성격과 상대방의 대응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을 가장 효과적인 법률수단으로 과신하는 경우 적지않은 소송비용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됨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바 감정(鑑定)

특허권 침해에 대한 감정은 변리사의 고유기능이다. 침해여부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판단은 사법기관인 검사나 판사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각자 서로 반대되는 감정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

국 어느 감정결과를 채택할지 어려워 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흔하여 감정의뢰인은 적지 않은 감정료를 지불하고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필자의 경우 감정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대한변리사회는 상반된 변리사의 개인감정이 변리사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며 결국 분쟁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리사 3인에 의한 공인감정제도를 채택하였다. 과거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리사회가 지명한 한사람의 변리사가 공인감정을 수행하던 제도와 달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공동으로 공인감정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감정의뢰인은 자기의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공인감정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허심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분쟁해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은 침해여부에 대한 전문적판단이나 변리사는 이러한 범주에 머물러서는 아니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찾아내야한다. 고의의 부인(否認)이나 법률해석의 차이, 선사용권(先使用權)의 주장, 권리의 내용에 대한 법률해석, 권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등에 이르기까지 일반 감정서가 아니더라도 감정의견서나 법률해석감정서 등을 개발해야 한다.

사. 분쟁해결수단의 선택과 병행

이상에서 제시한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적 수단은 상황에 따라 선택되고 병행되어야 한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특허심판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음은 물론이며 경우에 따라 시차를 두고 또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분쟁해결수단의 선택과 병행문제는 특허침해 여부를 판가름 해주는 공적기관인 특허심판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따라서 특허분쟁의 해결에는 보다 치밀하고 지혜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허심판소의 심결이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분쟁해결의 노력은 심판에서 승소하는데 집중될 것이나 심결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심결이 아닌 다른 구제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 권리침해로 인한 피해와 무리한 특허주장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 특허심판과 법원판결의 충돌

특허권침해로 고소되어 기소되었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그 후 특허심판에서 패소하였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반대로 특허심판에서는 승소하였으나 고소는 불기소처분되고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는 결국 행정기관의 처분(심결)과 사법기관의 판결에 서로 충돌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차이와 소송 또는 심판대리인인 변호사나 변리사의 능력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행정기관인 특허심판소의 심결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되므로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사법기관이 특허심판소의 심결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형사고소에 실패한 특허권자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특허권자는 승소한 특허심판소의 심결을 이유로 검찰항고 또는 항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며 항고나 항소에서 패소한다면 대검찰청이나 대법원의 결정이나 판

결을 통하여 심결과 판결(또는 결정)의 충돌에 대한 최종의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허분쟁의 필승전략은 분쟁이 이상과 같은 법률적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법률적 교착상태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의 상황을 예견하고 예견된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4. 특허권의 내용에 대한 이해

가. 들어가는 말

특허권을 단지 독점실시권이라고 말한다해도 틀리지않다. 독점실시란 독점제조라고 해석해도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특허권을 행사하고 특허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는 특허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나. 특허권에 관한 법률규정

특허권자는 업(業)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實施)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제94조).

‘실시’란 물건의 발명인 경우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講約)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특허법 제2조 3호).

이와 같거나 유사한 규정은 의장법이나 실용신안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실용신안법 제23조, 제2조, 의장법 제41조, 제2조).

특허발명을 업(業)으로 실시한다는 말은 사업목적으로,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이익을 얻기위하여 실시한다는 것을 뜻한다. 실험을 위한

.....

목적으로, 교육목적으로(다만, 교육을 위한 발명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연구목적으로 특허제품을 제조하였다면 일단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실시’란 물건의 발명인 경우 생산 즉 제조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제조는 물론 판매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이다. 제조한 기계를 물론 판매하여 이익을 얻고자하는 행위이다. 제조한 기계를 자기 공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나 타인에게 판매하여 타인에 사용하는 경우도 실시해 해당한다. 특허권을 침해한 라디오를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소비자가 그 라디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제조자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나 소비자는 특허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소비의 목적에서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품인 보도블럭을 구입하여 도로에 포장한 경우에도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 보도블럭을 포장하는 것은 소비재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일뿐 적극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용이기 때문이다. 특허를 모방하여 제조한 ‘호도과자 제조기’를 구입하여 호도과자를 제조하는 사람은 호도과자 제조기를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다. 실시 행위중 ‘양도’란 무상양도와 유상양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무상양도는 돈을 받지 않고 주는것, 유상양도란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양도는 경제적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무상양도는 다른 경제적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게되며 한편으로는 특허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특허품의 판매를 저하시키게 된다는 취지에서 특허권침해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대여’는 특허침해제품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행위로서, ‘수입’은 특허품의 시장을 잠식하는 행위로서,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講約)’은 양도 또는 대여를 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결국은 양도 또는 대여를 하게 되는 행위로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방법의 특허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특허권 침해가 성립된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인 경우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특허방법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생각되므로(특허법 제29조) 다른 방법으로 생산하고 있음을 밝히지 못하는한 특허권 침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상의 어느 경우라도 특허권의 존재를 알고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특허권의 존재를 알기전에 실시한 행위는 민사적손해배상의 책임은 남을 지라도 형사적 책임은 없음을 알아야 한다.

다. 상표권에 관한 법률규정

상표권자는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상표법 제50조).

상표의 사용이라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말한다(상표법 제2조 1항).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

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상표법 제66조).

참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이다. 왜 법규정이 이토록 까다롭고 이해하기에 어렵게 되었을까? 그것은 상표권침해행위가 그만큼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었음을 말해준다.

이상의 법규정을 알기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와
- (2) 상표자체(라벨이나 레테르)만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와
- (3) 상표자체(라벨이나 레테르)를 제조하기위한 금형이나 인판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도 상표권의 침해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특허권침해와 달리 '수출'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수출장려의 정책적 목적에 있다고 사료된다.

5. 특허분쟁의 필승요건

특허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몇가지 필승요건을 이해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제시한 필승요건은 하나 하나가 모두 중요한 것이며 그중 한가지 또는 몇가지가 결여된다면 그만큼 승리의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가. 사안의 내용

특허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건인가 또는 이길 수 없는 사건인가를 가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허권과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며 달리 특허권과 대응할 수 있는 선행기술의 자료나 유리한 법률규정이 없다면 분쟁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정확한 기술적 감정결과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사안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우 그리고 그 판단이 옳은 경우라면 싸울 필요가 없다. 다만 사안이 불리한지 그리고 특허권에 해당할 선행기술자료가 있을 것인지,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규정이나 특허권 자체에 약점이 있는 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특히, 사안이 유리한지 그리고 불리한지에 대한 변리사의 판단은 각기 다를 경우도 있고 사안이 크게 불리한데도 이길 수도 있다는 희망사항적 판단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다각도로 사안을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나. 대리인의 능력

사안이 유리한 경우라도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은 분명하다. 대리인은 해당 특허분야의 기술을 깊이 이해해야 하며 특허청구 범위의 해석에 뚜렷한 안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허권의 주변에 무수히 얽혀 있는 법률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사안의 유·불리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상대의 약점은 찾아내어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규정이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내지 못하여 패소하는 일이 있다.

다. 본인의 지원능력

대리인은 대리인이며 결코 본인이 아니라 승소의 결과는 대리인에게 보람과 보답을 안겨주지만 모든 이익은 결국 본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싸우는 것이므로 본인의 지원 능력이 미흡하면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사건이 난해하거나 수많은 자료를 찾고 정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노력에 비례하여 승소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보상이 적은 용병은 결코 목숨을 걸고 싸우려 하지 않는 것이다.

라. 심판관과 검사, 판사

특허 심판에 있어서의 심판관, 고소사건에 있어서의 검사,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판사는 특허분쟁의 심판자이다. 심판이나 결정, 판결은 법에 따라 그리고 양심에 비추어 공정하게 내려야 하는 것이 이상이지만 사람의 가치관이나 정의감, 지식, 성격에 따라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심판자를 잘 만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심판자에게 성의있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 이해하기 쉽고 논리에 맞는 주장을 펴는 것은 결코 무시될 수 있는 필승요건이 아닌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필승의 요건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으나 대리인의 능력은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다.

대리인은 사안의 유·불리성을 판단하며 분쟁 사건 전체를 유리하게 컨트롤하고 논리적인 이론과 증거제시로 사안을 유리하게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리인의 능력을 어떻게 판별해 낼 수 있을까? 사안의 유·불리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 할 수 있는지, 분쟁의 결과를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지, 사건에 대한 열성과 집요함을 업계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지, 특허분쟁에 관한 경력이 어느정도인지 등을 기준으로 적임자를 찾는다면 유능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6. 중간 결어

이제까지 특허분쟁의 필승전략이라는 논제 가운데 특허분쟁의 이해와 기본전략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두고자 한다.

특허분쟁의 필승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법률수단등을 이해하고 특허권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야 한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는 병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신의 무기인 특허권과 법률수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설사 승리를 한다해도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는 없다.

나아가서 특허분쟁의 필승요건을 실천에 적용할 수 있다면 특허분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며 특허분쟁사건을 수행할 유능한 대리인을 찾는다면 결코 지지 않는 싸움이 될 것이다.

특허분쟁의 이해와 기본전략은 특허분쟁의 필승전략의 원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재미없는 설명이 되고 말았다. 다음에 이어지는 논제들은 각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므로 많은 실례와 실전적 경험을 소개할 수 있어 분명히 진진한 흥미와 관심이 넘칠것으로 기대한다. <계속>